

낚시어선업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2일
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면허의 직종 및 등급	
어선 명세	어선번호	어선의 명칭		
	총톤수 톤	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		
	선적항	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	명 명	
주 영업장소				
영업시간	[] 주간(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) [] 야간(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) [] 기타(시 ~ 시)			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5조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성명(법인명)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
(법인등록번호)

주 소:

(전화번호:)

특별자치도지사 ·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어선검사증서 사본 2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. 「선박직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. 선장의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7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)	수수료 조례에 따름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(신고인이 선장의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·포구명을 적습니다.
-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(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)를 적습니다.
-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항·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·포구명을 적습니다.

업무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